[변경대비표]

1. 펀드명 :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기준일: 2022.03.21
효력발생일: 2022.03.25

4. 정정사유

①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2등급→1등급)

②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③ 기업공시서식 변경 반영

④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⑤ 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자본시장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
시행령 개정	① 생략	① 좌동
사항 반영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
	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	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
	시에 대한 감시업무, < 추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
	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
		행한다.
	③ 생략	③ 좌동
자본시장법	제8조(신탁금의 납입)	제8조(신탁금의 납입)
개정사항 반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
영	는 때에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	는 때에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
	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
	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
	경우 추가투자 신탁금은 추가 설정하는 날에 공고	가투자 신탁금은 추가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
	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	해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
	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해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생략	③좌동
자본시장법	제9조(수익권의 분할)	제9조(수익권의 분할)
개정사항 반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영	분할하며, 수익증권 으로 표시한다.	분할하며, 수익증권 으로 발행한다.
	②생략	②좌동
자본시장법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게정 나침 HL	○ 지하트지어지는 제6조 및 제7조이 그전에 이렇	지하트지어지는 제소자 및 제공자의 그전에 이취 트
개정사항 반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
ල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	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
	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
	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6. 생략	1~16. 좌동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
	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수	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수
	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수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3~⑤ 생략	3~⑤ 좌동
자본시장법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개정사항 반	①~③ 생략	①~③ 좌동
ප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	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
	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	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
	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	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
	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	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리한다.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0.1111		
오기정정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우에는 제18조 제1호내지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	18조 제1호내지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
	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	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록 하여야 한다.	한다.
	1~5. 생략	1~5. 좌동
TIH UTLH		
자본시장법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시행령 개정	① 생략	① 좌동
사항 반영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
	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
	③ 생략	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③ 좌동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1~6. 생략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1~6. 좌동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⑤ 생략	서 법 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THUTU	TUOE T (TI TU	⑤ 좌동
자본시장법	제25조(판매가격)	제25조(판매가격)
시행령 개정	①생략	①좌동





사항 반영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76 66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50분 영화 후에 사람을 합합한 영수 구역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	50분 정의 후에 자리를 납입한 정부 구역중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 에
	│ 단배기적는 자료를 합합한 정답로구나 제3정답로 │ 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TH UT!		게으로 살아가고 다 할머니니?
자본시장법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시행령 개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
사항 반영	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 (15시 30분 경과 후	매를 청구한 날부터 2영업일 (15시 30분 경과 후에
	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환매청구시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경우 (토요일은 제외한	거래소 개장일이 아닌경우 (토요일은 제외한다.)제2
	다.)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	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
	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
	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 (15시 30분 경과 후에	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환매청구시 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
	지급한다.	급한다.
	③ 생략	③ 좌동
	④ 생략	④ 좌동
오기정정	제28조(환매연기)	제28조(환매연기)
	①~⑥ 생략	①~⑥ 좌동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1~2. 좌동
자본시장법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시행령 개정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
사항 반영	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당	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당
	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	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
	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당	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당
	해종류 수익증권상당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	해종류 수익증권상당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
	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당해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전날의 당해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	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
	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③ 생략	②~③ 좌동
자본시장법	제32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제32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시행령 개정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사항 반영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생략	② 좌동
자본시장법	제37조(수익자총회)	제37조(수익자총회)
시행령 개정	①~⑤ 생략	①~⑤ 좌동





사항 반영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 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것으로 본다. 한 것으로 본다. 1~3 생략 1~3 좌동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제2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⑪ 생략 (7)~(11) 좌동 자본시장법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시행령 개정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항 반영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1. 좌동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 제222조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는 경우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④ 생략 ②~④ 좌동 자본시장법 제39조(보수) 제39조(보수) 시행령 개정 ① 생략 ① 좌동 사항 반영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 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간으로 하 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간으로 하 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 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 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 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 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 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 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 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생략 ③ 좌동 자본시장법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시행령 개정 ①~④ 생략 ①~④ 좌동 사항 반영 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또는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변경시행일 전 까지 상호협의가 되지 않 결정하되, 변경시행일 전 까지 상호협의가 되지 않 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 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대상금액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1. 대상금액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시행일 전일까지 제39조제3항에 따라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보수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

해 지급한 비용(법률자문, 사업성평가, 금융자문

시행일 전일까지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보수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

해 지급한 비용(법률자문, 사업성평가, 금융자문

	T =.	T =.
	등)	등)
	2. 생략	2. 좌동
자본시장법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개정사항 반	①~② 생략	①~② 좌동
영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	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
	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별통지하여야 한다.
		 ④좌동
오기 정정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 55	(1 · · · · · · · · · · · · · · · · · · ·	[①~② 좌동
	© © © ' ③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 ⓒ = - ⓒ ③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	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소규모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합성하다는 국국의 무취단국에 다음 국 보기 표단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또구 중국에는 중구를 들한다. 1. 법시행령 제223조 제3 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글 또구 중국에는 중구글 글린다. 1. 법시행령 제223조 제3 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1. 납시성당 제225또 제3 <u>8</u> 모든 제4오에 예정될 것	1. 입시성당 제225도 제3 <u>로</u> 모든 제4모에 대당할 것
	^^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	│ ^{'^} │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
	2. 납 제229호에 따른 납압구시기구의 중류기 중말 할 것	2. 급 제229도에 띄는 급립구시기구의 승규가 중 일할 것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
	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M 생략	4 좌동
자본시장법	0 0 1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기정사항 반	1300m(8 1 것 === 1 8) ① 생략	(1) 좌동
අ අ	③ 0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8	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 파일이 무 시세없이 세3이에서 이어는 이번에 되 - 라 공시하여야 한다.	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 용시하여 한다. 1. 생략	다 용시하여 한다. 1. 좌동
	·· ·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ㅋㅎ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2. 전에인기 또는 전에세계의 필증 및 그 자유 3~5. 생략	지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3~9 생략	세230조에 떠는 전배금지용합합구시기구의 근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 및 그 사
		유를 포함한다)
		12 - 12 - 17 1 1 1 1 1 1 1 1 1
		③~⑨ 좌동

<투자설명서>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업공시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식 변경 반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
ලි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
		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추가>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
		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떄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 변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
경에 따른 업		력
데이트[요약	_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ㅡ[ㅡ ' 정보]		
자본시장법	- - 매입·환매방법	매입·환매방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	MX영업일	X영업일
영[요약정보]		1000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자 주소 변	대표번호 : 02-3770-1300	대표번호 : 02-2118-0500
' ' ' ' ' ' ' ' ' ' ' ' ' ' ' ' ' ' '		- -
· 보]		
집합투자업자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1 7 6 8	연락처 : 02-3770-1300	1 37층
	근국자 : 02-3770-1300	1378 연락처 : 02-2118-0500
기준일자 변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
경에 따른 업	· ·	
	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데이트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1.집합투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1.집합투
	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718117181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자본시장법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시행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삭제>
개정사항 반		
영		
자본시장법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시행령	나. 투자제한	나. 투자제한
개정사항 반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영	동일종목투자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	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
	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o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	o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
	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o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o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내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
	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
	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 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추가>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삭제> 한국주택금 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기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결산에 따른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위험등급 변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1 B O B C C 경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역
0	11日	11日8日 : 18日 수익률 변동성 : 25.75 %
자본시장법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및 시행령	세2구. 1. 배립, 전배, 한편물자 꽃 기준기의 극당 기준	세2구. II. 메립, 전메, 한편물자 꽃 기준기의 극당 기준
	^{기 문} 제 X 영업일	
개정사항 반 영	게 시 영합을	X 영업일
<u> </u>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및 시행령	평가, 제3부 1. 재무정보,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평가, 제3부 1. 재무정보,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개정사항 반	관한 사항	관한 사항
에 6시 6 년 영	면접 설명 대차대조표	^{근근}
집합투자업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자 주소 변	제국	제국 1.1 입합 제 입자에 만든 제공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시 구노 년 경, 회사 연	2길 32	구소 및 현극사 : 시킬록일시 중중모두 역의대로 108 파크원1 37층
	- -	
혁 업데이트	(02-3770-1300 www.wooriam.kr)	(02-2118-0500 www.wooriam.kr)
	가. 회사개요	가. 회사개요
	<신설>	2021.10.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집합투
THUTLU	게 4 년 2 지하트카케샤 카카취보이 한번 나왔다.	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자본시장법	제 4 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	제 4 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
및 시행령	탁업자)	탁업자)
개정사항 반	< 신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영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
채권평가회	제4부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4부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사 사명변경	KIS채권평가	KIS자산평가
자본시장법	제 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제 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및 시행령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반영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추가 >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	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자본시장법	제 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 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및 시행령	가. 의무해지	가. 의무해지
반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는 제외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자본시장법	제 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제 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및 시행령	나. 수시공시	나. 수시공시
반영	(2) 수시 공시	(2) 수시 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준일자 변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
경에 따른 업	력	력
데이트	-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자본시장법	매입·환매방법	매입·환매방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	제x영업일	X영업일
영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자 주소 변	대표번호 : 02-3770-1300	대표번호 : 02-2118-0500
경		



